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|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사회복지과-12553 |
| 등록일자 | 2015.3.30.  |
| 결재일자 | 2015.3.30. 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      |

|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주무관 | 장애인복지팀장 | 사회복지과장 | 복지문화국장          |  |  |
| 김선아 | 한문석     | 박선옥    | 전결 03/30<br>김창현 |  |  |
| 협조자 |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|  |



## 2015년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지원 계획

- 사업명 :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
- 사업기간 : 2015. 4월~12월
- 추진방향
  - 연합 인식개선 캠페인
  - 복지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인식개선사업 추진
  -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식 연합교육
-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지원비 : 금46,000천원(금사천육백만원)
  - 복지관개별인식개선사업 : 10,000천원  
산출근거 : 2,000,000원 × 5개 복지관 = 10,000,000원
  - 장애인식연합 캠페인 : 8,000천원  
산출근거 : 8,000,000원 X 1회 = 8,000,000원
  -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교육비 : 28,000천원  
산출근거 : 28,000,000원 X 1회 = 28,000,000원

**강 남 구**  
(사 회 복 지 과)

## 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| 검토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확인 및 적시사항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관련 규정 및 근거                      | 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br><br>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81조<br>※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(맨 뒷장) 첨부   |
| 추진 경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br>• 추진경위 : 매년 장애인복지관 연계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실시   |
| 예산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br>•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 |
| 수혜자 및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| 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br>• 대상 : 공무원 ----, 일반주민 : 다 수, 특정인 : ----, 기타 : ----  |
| 분야별 검토사항<br>(계속 : ○)<br>(신규 : ) | 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br>① 관련부서 협조 ----- (○)<br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----- ( )<br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----- ( )<br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----- ( )<br>⑤ 시장조사 ----- ( )<br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----- ( )<br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----- (○)<br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----- ( )<br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----- ( )<br>•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|
| 타 기관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| 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br>- 자치구별 자체 행사 추진  |
| 전문가 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br>관련 법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자문   |

# 2015년 장애인인식개선 사업 지원 계획

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호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더불어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, 체험활동, 캠페인 등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복지관 연합 및 개별 특화사업으로 추진, 우수사례를 발굴 정착·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※ 관련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,81조(비용의 보조)

## I 사업 개요

■ 사업명 : 장애인인식개선 사업

■ 사업기간 : 2015. 4월 ~ 12월

■ 추진방향

- **복지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인식개선교육 추진**
  - 어린이, 청소년 대상 장애체험 및 인식개선교육 실시
  - 장애발생예방 교육 및 거리 홍보 등
- **장애인복지관 연합 거리 캠페인**
  - 복지관연합 지역사회 계몽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확대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
- **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교육**
  -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연합 장애인식개선교육
  - 민·관 네트워크 형성

## II 세부추진계획

**장애인복지관 연합 거리 캠페인**

| 구분 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| 비고 |
|----|--|--|----|
| 연합 | 2015년 강남구 연합 장애인식개선 캠페인<br>“다른 만남 같은 생각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시 : 2015. 4. 20(월) 11:00~16:00</li> <li>○ 장소 : 강남역 LIG손해보험 빌딩 앞</li> <li>○ 주최 :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5개소<br/>(강남장애복지관, 성모자애복지관, 청음회관, 종현복지관, 하상장애인복지관)</li> <li>○ 주요내용 : 장애인식개선기념식, 기념공연, 길거리 캠페인, 점자프린트, 안마시연, 기관홍보 등</li> <li>○ 체험부스운영 : 장애인식개선퀴즈, 점자배우기, 수화배우기, 인식개선약속, 커피나눔</li> <li>○ 장애인생산물 판매 :<br/>-강남구직업재활센터 : 핸드메이드 비누, 베이커리, 화분<br/>-성모자애보호작업장 :세제, EM제품</li> <li>○ 기념품 배포 : 물티슈 제작 배포 등</li> </ul> |    |

## 복지관별 자체 인식개선사업

| 구분       | 사업명   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강남장애인복지관 |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실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장애인식개선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: 학생, 단체, 자원봉사자,기업등</li> <li>- 학교방문교육 및 복지관내방 교육</li> </ul> </li> <li>□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: 지역주민</li> <li>- 내용: 복지관 행사를 활용한 지역 사회캠페인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   |    |
| 성모자애복지관  | 장애체험장 및 보조기구전시관 운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장애체험장 및 보조기구전시관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대상: 지역주민(기업,단체,학교 개인등)</li> <li>-장애체험 제공: 시각장애,언어장애,신체장애,지적장애,저시력,폐쇄공간체험 등</li> <li>-보조기구 안내 : 편의시설, 보행 및 이동 보조기구, 용변 및 목욕보조기구 등</li> </ul> </li> <li>□ 인식개선학교교육 및 캠페인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근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대상 교육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 |    |

| 구분        | 사업명            | 사업내용  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|
| 청음회관      | 장애인식개선 교육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역사회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대상: 복지관 인근 지역주민 및 기업</li> <li>-장소: 지하철 역사 및 기업</li> <li>-내용: 인식개선 리플렛 및 홍보물배포, 복지관 및 수화교육 안내, 수화공연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|
| 충현복지관     | 장애인인식개선 홍보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대상: 충현복지관 인근 지역사회기업, 방문봉사단체, 학교</li> <li>-내용: 시청각자료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해교육</li> </ul> </li> <li>□ 도전골든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 : 전국성인 지적 및 발달장애인</li> <li>- 내용 : 퀴즈대회 개최</li> </ul> </li> </ul> |    |
| 하상장애인 복지관 |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캠페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대상: 지역주민</li> <li>-내용: 장애인해교육 및 장애체험활동</li> </ul> </li> <li>□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장애 간접체험 및 보조기기사용체험</li> <li>-장애인생산물품 체험/유인물 배포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
###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연합교육

| 구분       | 사업명             | 사업내용  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|
| 장애인복지 시설 |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합교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합교육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시 : 2015. 8월 ~ 9월 중</li> <li>○ 장소 : 미정</li> <li>○ 참석인원 : 강남구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60여명</li> <li>○ 주요내용 : 인식개선 교육 및 시설간 네트워크 형성</li> </ul> </li> </ul> |    |

### III 지원 예산

- 장애인인식개선 연합캠페인 : 금8,000,000원(금팔백만원)
  - 산출근거 : 8,000,000원 x 1회 = 8,000,000원
- 복지관별 장애인식개선 사업 : 금10,000,000원(금일천만원)
  - 산출근거 : 복지관 5개소 x 2,000,000원 = 10,000,000원
-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연합교육
  - 산출근거 : 28,000,000원 x 1회 = 28,000,000원
- 예산과목 : 장애인복지증진, 장애인생활안정지원, 장애인인식개선사업  
 민간이전, 사회복지사업보조 (307-11)

### IV 행정 사항

- 장애인인식개선 거리 연합 캠페인
  - 건설관리과 LIG빌딩 앞 보도 사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

## 장애인복지법

[법률 제11690호(정부조직법) 일부개정 2013. 03. 23.]

###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

-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, 공무원, 근로자,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국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[시행일 2007.10.12]]

### 제81조(비용 보조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[[시행일 2007.10.12]]

---